

의안번호	2219907
의 퇴 인	이성윤의원
회 답 일	2026.8.28.
추계번호	26D4004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조제3항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)	경찰서장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재비행 방지를 위하여 소년과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.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.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심리치료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	재량규정
2	제5조의5(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)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소년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음. 다만, 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	재량규정
3	제5조의6(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)	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함 1.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. 소년의 연령,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	의무규정
4	제17조의2(국선보조인)	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1.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.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.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의무규정
5	제25조의2제4항(피해자 등의 진술권)	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, 심리개시 여부, 심리 결과, 집행의 종료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제67조의3(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	-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 -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 2. 소년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. 재원조달방안 5. 그 밖에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4조제3항(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)	•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5조의5(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)	
3	제5조의6(수사절차상 국선번호인)	
4	제17조의2(국선보조인)	
5	제25조의2제4항(피해자 등의 진술권)	
6	제67조의3(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	• 미대상 - 이미 법무부에서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

2. 상세 사유

- 경찰서장이 소년부 미송치 시 상담·교육 등 조치(안 제4조제3항)
 - 개정안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, 교육 등을 실시

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상담·교육 등이 필요한 사건의 수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, 상담·교육 실시 기관 및 실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 현재도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·검찰·법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행예방교육, 상담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

□ 진술조력인의 수사참여(안 제5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조사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조사 대상 중 진술조력인이 필요한 소년의 수와 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현재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, 2026년 진술조력인 수당으로 2,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□ 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(안 제5조의6)

- 개정안에 따라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거나, 소년의 연령,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면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 국선변호사에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데,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반면, 일반 국선변호사의 경우 활동 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
- 대법원 2026년 예산안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¹⁾로 260억 4,700만원이

1) 2015.3.1. 이후 위촉 기준 세진 보수(월)는 다음과 같음

1.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없는 자 : 600만원(최초), 700만원 인상(1회 재위촉), 800만원 인상(2회 재위촉)

편성되어 있으며, 일반 국선변호사 보수²⁾로 685억 7,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
- 다만,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, 소년의 연령,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 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국선보조인(안 제17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현재 재량사항인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할 경우 국선보조인 수당 지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는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 대법원은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에 대하여 매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

□ 피해자 등의 진술권(안 제25조의2제4항)

- 개정안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, 심리개시 여부, 심리 결과, 집행의 종료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할 경우 통지비용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피해자 등의 신청 여부와 사건별 피해자 수, 임시조치 여부 등이 달라 통지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통지방식을 우편으로 할지, 전자송달할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

2.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있는 자 : 700만원(2년이상 4년미만, 1회 채워축 후 800만원 인상) 800만원(4년이상)

2) 1. 구속영장청구사건과 체포·구속적부심 청구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: 매건 100,000원
(가) 국선변호인별 1일 담당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되는 사건의 기본보수 : 매건 60,000원
(나) 국선변호인별 1일 보수 상한액 : 매건 250,000원

2. 제1,2,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: 매건 각 금 550,000원, 예외적으로 1회 공판기일 종결 사건 등에는 500,000원

3.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의 기본보수 : 매건 200,000원

- 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